



제 438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50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타당성평가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15.

다. 회 부 일 : 2026.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타당성평가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illegible]

현행	개정안
	날부터 시행한다.

가. 사망사업 타당성 평가의 독점구조 및 입법 배경

현행 「사망사업법」 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시행 2026. 2. 1.) 이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망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이후 「산림재난방지법」의 시행(2026. 2. 1.)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사망사업법」 상의 위탁 근거는 삭제되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됨.¹⁾

그런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수행을 통해 사망사업 관리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치산기술협회(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 산림청 특정감사('24.4.24~4.26)에서 과도한 성과상여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사망사업 타당성평가의 한국치산기술협회 독점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1) 「산림재난방지법」 제62조(사업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임도, 산불예방·진화시설 및 사망시설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점검 및 안전진단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前 한국치산기술협회) 외에 다른 수행 주체에 대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 부재로 인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산림청은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하여 사업 비목을 일반용역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하여 잔액 정산을 통해 초과이익을 제한하고, 협회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타 기관에서도 수탁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 중임.²⁾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것으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에 대한 산림청 의견

산림청은 개정안이 사방사업 정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찬성하는 입장임.

2) 산림청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의 비목변경(자치단체경상 보조의 경우도 잔액 발생 시 정산하도록 교부조건 명시)은 '24년에 완료하였고, 법령 정비 사항은 계속 추진 중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요건을 갖춘 영리기관(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이 타당성평가와 시공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사업 효과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³⁾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

법률명	관련 규정
산림재난방지법	제57조(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u>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u>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u> 위탁할 수 있다.

3) 산림청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 수, 수행실적, 장비 보유 등 정량적 요건만으로는 기관의 실제 수행역량과 평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확실적인 지정요건 마련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산림청은 타당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전문기관으로 위탁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공익법인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2026년 7월 현재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은 설립된 곳이 없음.

【 사방사업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현황 】

단체별		설립목적	주요 업무
사단 법인	한국산림공학회	사방,임도,산림훼손지 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 회지 및 회보발간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 모임의 개최 3. 목적에기술훈련분야의연구격려와포상 4. 한국임학회의관련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의 수행 5. 기타연구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한국해안연구회	해풍의 영향 범위에 있는 자연의 안정, 조화와 지속을 도모하고자 해안림의 조성 육성 관리 보전 등의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등	1. 해안림 조성,육성,관리,보전 등의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등
특수 법인	한국산림재난 안전기술공단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 수행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산림재난조사·예찰·점검 및 산림재난 방지에 관한 연구 3. 산림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원 4. 산림재난방지에관한교육·훈련 5. 산림재난방지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6. 행정기관의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위탁사업 7. 「산림재난방지법」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교육과 홍보지원 8. 산림재난방지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 임도, 산불예방·진화시설 및 사방시설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점검 및안전진단

단체별		설립목적	주요 업무
			10. '1'부터'9'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11. 그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산지보전협회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한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의 육성에 기여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2. 산지훼손실태조사 3. 산지관리 연구 및 교육·홍보

주) 산림청은 한국산림공학회의 경우 기관회원으로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망사업 타당성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함.

※ 자료: 산림청

다. 검토의견

타당성평가는 재난 예방을 위한 사망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행정절차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영리기관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재해 예방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산림청의 비영리 전문기관 중심 위탁 체계는 공익적 측면에서 타당하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외에 추가하는 위탁기관을 한국산지보전협회 1곳(사망사업 관련 공익법인은 현재 설립된 곳이 없음)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여부는,

위탁기관을 타 전문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편중된 위탁(또는 용역계약 독점과 특혜) 구조를 개선하고,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당초 국정감사 지적 및 입법 취지와 부합되는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타당성평가 업무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

타당성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⁴⁾

문 의 처
02)6788-5423

4)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 **설립목적:** 산지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설립근거:** 「산지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 **설립일자:** 2004. 4. 1.

□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번길 51 창민빌딩 4~6층(탄방동 646)

□ **임원명단**

○ 임원단: 회장 1명, 비상임감사 2명, 비상임이사 5명

□ **조직 및 직원현황**

○ 조직: 3본부(9센터, 3실)

○ 인원: 124명('26.6월 기준)

- 인적구성(124) : 임원 1명, 직원 123명

* 조사인력 : 68명

- 전문인력(92) : 박사 22명, 석사 25명, 산림공학기술자 45명

* 박사 : 건설환경공학(1), 바이오환경과학(1), 산림경영학(1), 산림과학(1), 산림자원 및 환경학(1),
산림자원학(4), 생물학(1), 임학(1), 조경학(1), 지리학(2), 측량 및 GIS(1), 토목공학(1),
토목환경공학(1), 통계학(1), 한방식품영양학(1), 환경계획 및 조경학(2), 환경생태공학(1)

* 석사 : 기후환경학(2), 도시환경정책학(1), 산림자원학(7), 산림과학(1), 산림자원생산(1),
산림학(1), 생태조경학(2), 임학(2), 자연지리학(1), 전자공학(1), 지구정보공학(1),
지리학(2), 환경원예학(2), 경제학(1)

□ 주요 기능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등 조사·평가
- 산지구분, 산지훼손실태, 태양광발전시설 실태 등 산지 관련 실태조사
- 산지정보시스템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정보화 사업
- 민북지역 산지관리 모니터링 등 특정 지역 산지관리
- 풍력발전단지·태양광발전시설 현장점검, 토석 채취 현장 모니터링 등
-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도시숲 지원센터

□ 주요 실적(‘25년 기준 산사태예방 유사 실적)

-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 54건
- 산지경관 영향평가 : 포천 토석채취장 산지경관 모의실험 약 8.1ha
-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 익산왕궁 자연휴양림, 장수 산림레포츠시설(2건)
- 임도타당성평가 : 단양군 임도개설 예정지 2개 노선(3.4km)
- 토석채취허가지 현장 모니터링 조사
 - 산림청 : 전국 6개 권역 토석채취허가지 현장 모니터링(230개소)
 - 지자체 : 체적량, 수계망, 하천흐름, 유역 및 집수량 분석(정읍·완주군 5개소)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 전국 사후모니터링 조사물량 88% 수행
 - 산림청 : 2개 사업, 73개소 / 지자체 : 8개 기관 31개소
- 풍력발전단지 현장점검 : 34건(274.2ha)
-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점검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 4건
- 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점검 : 산지태양광발전시설 370개소
- 목재수확대상지 사전타당성조사 : 국·공유림 대상 총 62개소(1,124.7ha) 수행
- 산사태 피해지 주변 입목수확지 현장 조사 : 42개소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지정 및 해제조사 : 5개 지자체 6건 수행
 - * 남양주, 금산, 장성 등 383개소 중 취약지역 심의대상 178개소 제안
 - * 영동군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조사 18개소 중 취약지역 해제심의 5개소 제안
- 산지훼손 실태조사 : 강원특별자치도 990,008ha 훼손실태 조사 수행
- 수목장림 입지분석 : 전라·제주 일원 1,296,945ha에 대한 입지분석 수행
- 제주 자생 세미맹그로브 실태조사 : 78개 대상지 및 563개소 신규대상지 실태조사